#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7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한정애·장철민·박희승

조인철 · 송옥주 · 정성호

추미애 • 윤후덕 • 진선미

김준형 · 양문석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 ·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 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 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천 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어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